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92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황운하 · 이강일 · 용혜인
서왕진 · 정춘생 · 김준형
차규근 · 강경숙 · 신장식
김선민 · 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런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번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 ----- ----- ----- ----- ----- ----- ----- ----- ----- ----- ----- ----- ----- ----- ----- <u>. 다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3. (생략) <u><신설></u> 5. ~ 6. (생략)	제89조(벌칙) ----- ----- ----- -----. 1. ~ 4의3. (현행과 같음) <u>4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5. ~ 6. (현행과 같음)
--	--